

#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559호)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7. 13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1999. 7. 13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9. 7. 21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### 2. 개정이유

- 0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2단계 조직개편으로 행정기구를 정비함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고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여 보다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기 위함.

### 3. 주요골자

- 0 고성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개정 : △57명(안 제2조)

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0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정비함에 따라 정원감축에 따른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키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### 5. 질의 및 답변

0 문 : 정원 57명 감축방안은

● 답 : 1999년 22명, 2000년 13명, 2001년 22명, 년차별 정원 감축계획이며, 자연감소 등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추진할 계획임.

### 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 : 1999. 7. 2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